

홍콩지사 비관세장벽 모니터링 (2023년 10월)

수입제도 변경사항 / 수출현안 및 동향

1. 홍콩

□ 6개 국가의 일부 지역 가금류 및 가금류 알 제품 수입 잠정 중단 (10.30월 기준)

○ 홍콩 식품 안전센터는 2023년 10월, 공중 보건 보호를 위해 6개 국가의 일부 지역에서 가금류 및 가금류 알 제품 수입을 잠정 중단키로 했으며 사유는 아래와 같음

국가	지역	내용	비고
남아프리카	Kgetlengrivier Local Municipality Emalahleni Local Municipality Modimolle-Mookgophong Local Municipality Mpofana Local Municipality Tswaing Local Municipality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H7N6,H5)	(2023년 6월까지) 對 남아프리카 냉동가금육 수입량 : 없음 가금류 알 : 없음
덴마크	Guldborgsund Municipality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H5N1)	(2023년 6월까지) 對 덴마크 냉동가금육 수입량 : 530톤 가금류 알 : 없음
미국	Jerauld Meeker Sanpete Becker Faulk McPherson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H5N1)	(2023년 6월까지) 對 미국 냉동가금육 수입량 : 12280톤 가금류 알 : 1950만개
폴란드	Piotrkowsk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H5N1)	(2023년 6월까지) 對 폴란드 냉동가금육 수입량 : 1350톤 가금류 알 : 없음
러시아	Komi Republic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H5N1)	(2023년 6월까지) 對 러시아 냉동가금육 수입량 : 52톤 가금류 알 : 없음
캐나다	Rural Municipality of Maple Creek No. 111 Municipal District of Greenview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H5N1)	(2023년 6월까지) 對 캐나다 냉동가금육 수입량 : 20톤 가금류 알 : 없음

* 출처 : 홍콩식품 안전센터(www.cfs.gov.hk)

2. 대만

□ 건강식품허가증 신청방법 및 규정 개정 예고

- 대만위생복지부식품약품관리서(TWFDA) / 2023.10.20.

- 건강기능식품관리법 제2조 1항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은 건강증진 효과 또는 건강관리 효능을 가진 식품을 의미하는 것임. 건강기능식품관리법 제7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식품업체가 건강관리 효능을 표시 또는 홍보하는 식품을 제조 및 수입 시 건강식품허가증을 신청·등록해야 함. 등록된 식품에 변경 사항이 있으면 중앙주관기관에 변경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 규정 주요 개정 사항
 - ① 건강기능식품 등록 시 심사 규정을 보완할 예정. 1개 이상의 제조공장을 통해 건강기능식품을 제조 시 각 공장의 작업과정과 작업환경이 규정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증명서류 및 공장 평면도를 제출해야 함
 - ② 건강식품 사업자는 위생복지부가 구축한 식품 온라인 신청 플랫폼(<http://oap.fda.gov.tw/>)에 접속하여 관련 검사 및 등록 건을 처리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 및 자료를 스캔하여 업로드할 수 있음.
 - ③ 건강기능식품허가증 등록 시 추가되는 심사 사항 및 관련 서류는 건강관리 효능, 영양성분 함량, 유통기한 및 보관방법 등이 포함됨
 - ④ 건강기능식품허가증을 연장, 변경, 이전 및 재발급 관련 신청서류 및 규정을 추가함.
- 위생복지부의 건강기능식품허가증을 발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건강증진 효과를 표시 혹은 홍보하는 식품을 판매하는 경우 건강기능식품관리법 제6조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하여 3년 이하 유카징역에 처하며 100만 이하 대만 달러 벌금이 부과됨. 아울러 건강기능식품관리법 제18조 1항의 1에 따르면 해당 식품 및 재고품을 바로 반송 및 폐기 처리해야 함.

<건강식품허가증 신청방법 추가 예정 23.10.20>

- 건강식품허가증 신청방법 개정 예정

預告修正「健康食品申請許可辦法」草案

<https://www.fda.gov.tw/TC/newsContent.aspx?cid=4&id=t622192>

1. 홍콩

□ 8월 식품 안전 보고서 발표 (9.29 / 9월 식품안전 보고서 10.31 발표 예정)

○ 2023년 8월, 약 9,100개의 식품 샘플 조사 결과 총 12건의 위반사례 발생

위반 사유	건수	샘플 종류
항산화물질 함량 초과	1건	수산물 가공 식품 2종
식품/약품(성분 및 라벨링) 규정 위반	1건	대추 1종
살모넬라균 검출	1건	식사대용식품 1종
방부제 함량 초과	2건	대추 2종
잔류농약 법적기준 초과	1건	계란 1종
금속 이물질 함량 초과	6건	그물버섯 3종, 버터 1종, 방게 1종, 감자 1종

* 출처 : 홍콩식품 안전센터(www.cfs.gov.hk)

○ 미생물 테스트를 위해 약 1,900개, 화학적 테스트를 위해 약 7,200개 샘플을 수집 · 시험함

- 미생물 테스트는 병원균 및 위생지표를 다루며, 화학 테스트에는 잔류 농약, 방부제, 금속 오염, 식용색소, 동물성 의약품 잔류물 등이 있음. 방사선 수준 검사에서는 지역 별로 샘플을 수집하여 방사성 세슘과 요오드 함량을 측정함
- 9월에 시행된 시험에 대한 샘플의 품목별 수는 채소 및 과일 4,100개, 곡물 및 곡물 제품 700개, 육류 · 가공육 및 가공제품 600개, 유제품 및 냉동 당과 제품 1,600개, 수산물 및 가공식품 800개, 음료 · 베이커리류 및 스낵 1,300개임

□ 9월 영양 성분표기 및 알레르겐 표기에 대한 적합성 검사 결과 월간보고 (10.20)

○ 영양 성분 표기

- 열량과 주요 7대 영양소인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포화지방산, 트랜스지방산, 나트륨, 당류의 함유량은 반드시 정확하게 표기되어야 함
- 2023년 9월, 25개의 식품 샘플에 대한 영양 성분 표기 조사 결과 위반 사례 없음

○ 알레르겐 표기

- 위반사례 없음.
-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진 8가지(글루텐을 포함하는 곡류, 갑각류, 계란, 생선,

우유 및 유제품(락토스 포함), 콩 및 땅콩, 견과류, 아황산염 10ppm 이상) 성분을 포함하는 경우 포장 식품의 성분 목록에 표기해야 함

* 출처 : 홍콩식품 안전센터(www.cfs.gov.hk)

2. 대만

□ 식약처 수입·수입 후 식품에 대한 원산지표시검사 강화

- 대만위생복지부식품약품관리서(TWFDA) / 2023.10.05.

- 식약처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수입 식품 11,847개에 대한 국경 검사 및 대만에서 판매되고 있는 돼지고기 관련 제품 12,974개(국내산 9,540개/수입 3,434개 포함)를 수집·검사 진행한 결과 락토파민이 검출되지 않았음
- 수입 돼지고기 관련 정보는 매일(근무일) 업데이트될 예정이며 2021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국내산 및 수입 돼지고기 총량은 2,636,493톤이며 이중 미국산이 20,728톤으로 0.8%를 차지함
- 수입업체는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모두 국내산 및 수입 돼지고기 관련 식품은 반드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함. 식약처는 지방정부 위생국 함께 지속적으로 돼지고기 원산지표시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2021년부터 지금까지 돼지고기 관련 식품 원산지 표시 검사는 총 244,298건이었음. 위반사례는 77건(합격률 99.97%)이 발생하였으며 해당 업체들에게는 2,046,000 대만 달러 벌금이 부과되었음
- 식약처는 식품추적시스템에서 공고한 업종 및 규모에 부합하는 식품업체들의 경우 전자 신고 대상으로 추적신고 신청 및 제조·배송 정보를 사실대로 신고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함. 관련 정보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식품안전위생법 제47조에 따라 3만에서 300만 대만달러의 벌금이 부과됨. 원산지 표시, 판촉, 광고 내용이 허위로 작성된 경우에도 식품안전위생법 제45조에 따라 4만~400만 대만달러 벌금이 부과됨

<식약처 수입·수입 후 식품에 대한 원산지표시검사 강화 23.10.05>

- 식약처 수입·수입 후 식품에 대한 원산지표시검사 강화

食藥署持續積極執行邊境查驗、後市場稽查及抽驗

<https://www.fda.gov.tw/TC/newsContent.aspx?cid=4&id=t622166>

1. 홍콩 통관 거부사례 (10월) (2023.10.01.~ 2023.10.30. 현재 기준)

○ 특이 사항 없음

2. 대만 통관 거부사례 (10월) (2023.10.01.~ 2023.10.30. 현재 기준)

○ 2023년 10월 기준, 한국산 치킨소스에서 금지 성분이 검출로 반송, 폐기 처리되었음(1건)

분류	발표일자	제품	원산지	문제 사유	내용	수입 물량	조치내용
가공	10.11 (접수일 08.30)	HOTCHOKING SAUCE (간장맛)	한국	금지 사용한 방부제 검출	식품첨가제규정 및 기준 제 18조 규정에 부합하지 않음. 히드록시벤조산 0.03g/kg를 검출되었음.	600 kg (50 CTN)	반품 또는 폐기